

의안번호	2206346
의 퇴 인	윤건영의원
회 답 일	2025.1.3.
추계번호	24B582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함(제4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¹⁾을 시행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재원) 임금채권보장기금
 - (지원금액) 연령 및 퇴직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1) 사업코드: 3051-300

- 대지급금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²⁾, 현행법은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신청 등을 하여야만 체불임금등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초과~3년 이하인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 중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자 수”이므로 사업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불가능함

- 즉, 개정안에 따른 사업대상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초과~3년 이하인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퇴직근로자의 규모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자를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움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대지급금)한 경우 지급한 체불임금 등을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있음³⁾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사업주변제금은 기타경상이전수입⁴⁾에 계상되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정확한 지출증가분을 산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수입증가분의 경우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2024년 예산안 기준 대지급금 회수가능률을 살펴보면, 2023년에 지급한 대지급금 지급액의 대지급금 회수가능률은 4.60%인 반면, 2022년에 지급한 대지급금

2)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4) 코드: 59-596

지급액의 대지급금 회수가능률은 11.33%로 연도별로 상이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도 4.8%⁵⁾에 불과하며,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가 중장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추계기간 동안 발생할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5) 2022년 기준

□ 개념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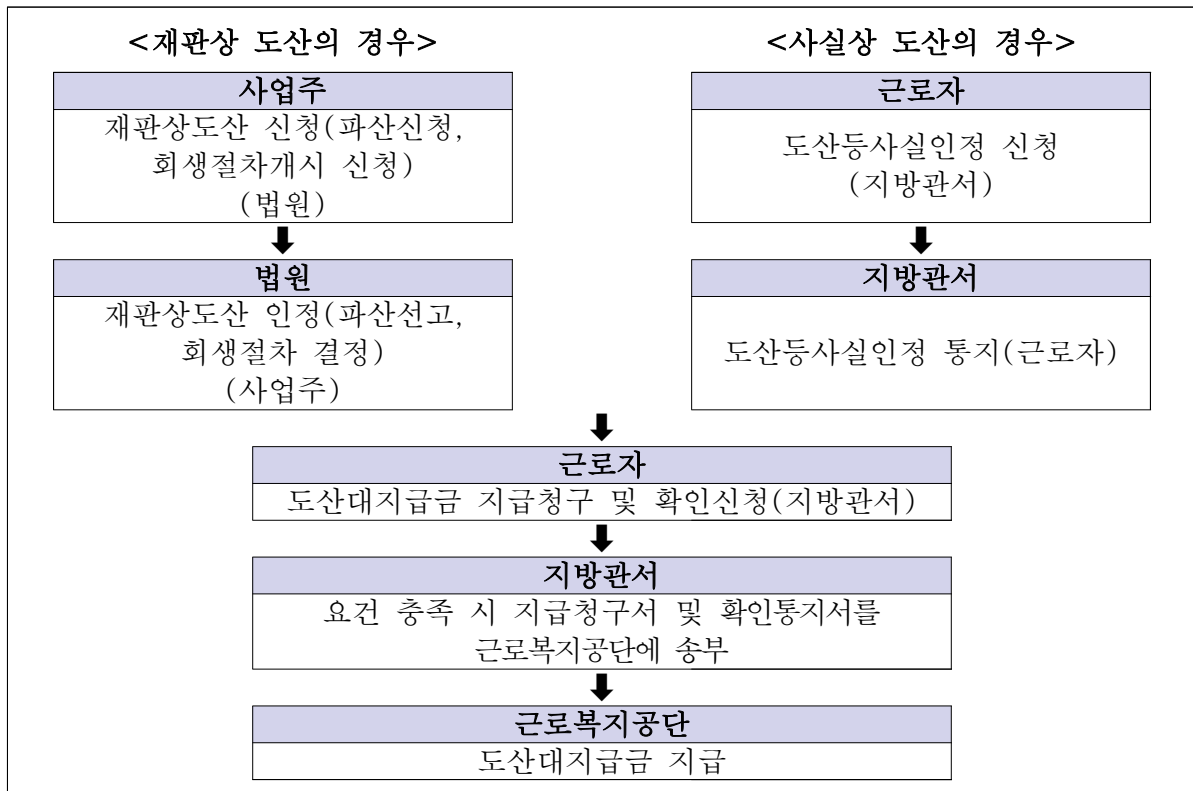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부표] 대지급금 지급 개요

구 분		도산대지급금 (舊 일반 채당금)					간이대지급금 (舊 소액 채당금)												
지원근거		①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②시행규칙 제5조 제1항					①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5호, 법 제7조의2 ②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지원목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채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채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퇴직 근로자					①퇴직 근로자	②저소득 재직 근로자											
시행기간		계속(`98~)					계속(`15.7.1~)	계속(`21.10.14~)											
지급 요건	근로자	①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채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마지막 채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채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사업주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③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 인정					①좌동 ②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채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채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①좌동 ②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채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좌동											
지급범위		①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②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채불액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채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채불액												
지원한도		최대 2,100만원 (단위: 만원) <table><tr><td>30세 미만</td><td>30세 이상 40세 미만</td><td>40세 이상 50세 미만</td><td>50세 이상 60세 미만</td><td>60세 이상</td></tr><tr><td>1,320</td><td>1,860</td><td>2,100</td><td>1,980</td><td>1,380</td></tr></table>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1,320	1,860	2,100	1,980	1,380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700만원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1,320	1,860	2,100	1,980	1,380															
청구기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채불확인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횟수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